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1. 3. 26.(금) / 총 5매(본문4, 참고1)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담당자	· 팀장 김기훈, 사무관 임승규, 주무관 조지예 · ☎ (044) 201-4761, 4870
보 도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2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땀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

(현행)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 음주운전
- 의무보험 : 대인 1천만, 대물 5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 무면허·뺑소니
- 의무보험 : 대인 3백만, 대물 1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개정)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 음주·무면허·뺑소니 + 마약·약물 운전
-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 금감원 협의·검토를 통해 추진 (표준약관 개정사항)

②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 ①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 ▶ ②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 ▶ ③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 도입 시 손해배상 예시(사례3-① 적용) >

현 행					개선방안 도입 시				
	A		B			A		B	
손해액	65만원		1,983만원		손해액	65만원		1,983만원	
과실비율	30%		70% (12대 중과실)		과실비율	30%		70% (12대 중과실)	
자차 수리비	A 자차 수리비	19.5만원	B 자차 수리비	1,388만원	자차 수리비	A 자차 수리비	19.5만원	B 자차 수리비	1,983만원
상대방에 대한 손해 부담액(대물)	B차 수리비 배상	595만원	A차 수리비 배상	45.5만원	상대방에 대한 손해 부담액(대물)	B차 수리비 배상	0원	A차 수리비 배상	45.5만원
	합계	614.5만원	합계	1433.5만원		합계	19.5만원	합계	2,028.5만원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응처요청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임승규 사무관(☎ 044-201-47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12대 중과실 (전체대비 비율, %)	109,493 (2.6)	1,263,631 (10.4)	99,786 (2.4)	1,191,841 (9.2)	91,330 (2.4)	1,104,820 (8.8)
전체 사고	4,184,674	12,133,374	4,107,331	12,965,972	3,764,182	12,566,980

* 자료 : 보험개발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